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740
----------	-------

발의연월일 : 2019. 11. 12.

발의자 : 김종희 · 이만희 · 정운천
이양수 · 경대수 · 손금주
윤준호 · 김성찬 · 오영훈
강석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 제3항 등).

법률 제 호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등기를 필요로 하는”을 “등기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요청에 응하여야”를 “요청을 따라야”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등기) ① · ② (생 략)</p> <p>③ 공사는 <u>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 한다.</u></p>	<p>제8조(등기)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u>등기가 필요한-----</u> ----- ----- -.</p>
<p>제18조(자료제공의 요청) ① (생 략)</p> <p>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u>요청에 응하여야 한다.</u></p> <p>③ (생 략)</p>	<p>제18조(자료제공의 요청)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요청을 따라야-----.</u></p> <p>③ (현행과 같음)</p>
<p>제20조(보고서의 제출과 서류의 검사) ① ~ ③ (생 략)</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u>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u></p>	<p>제20조(보고서의 제출과 서류의 검사)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u>사람은-----</u> ----- -----.</p>